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291호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
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15일

국토교통부 장관

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

대상지역		면적(km ²)	비 고
합 계		129.48	
경기도	용인시 처인구	남사읍	58.46
		이동읍	71.02

2.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23년 3월 20일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0m ² 초과
	상업지역	150m ² 초과
	공업지역	150m ² 초과
	녹지지역	100m ² 초과
	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	60m ² 초과
도시지역 외의 지역	농 지	500m ² 초과
	임 야	1,000m ² 초과
	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	250m ² 초과

4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에서 확인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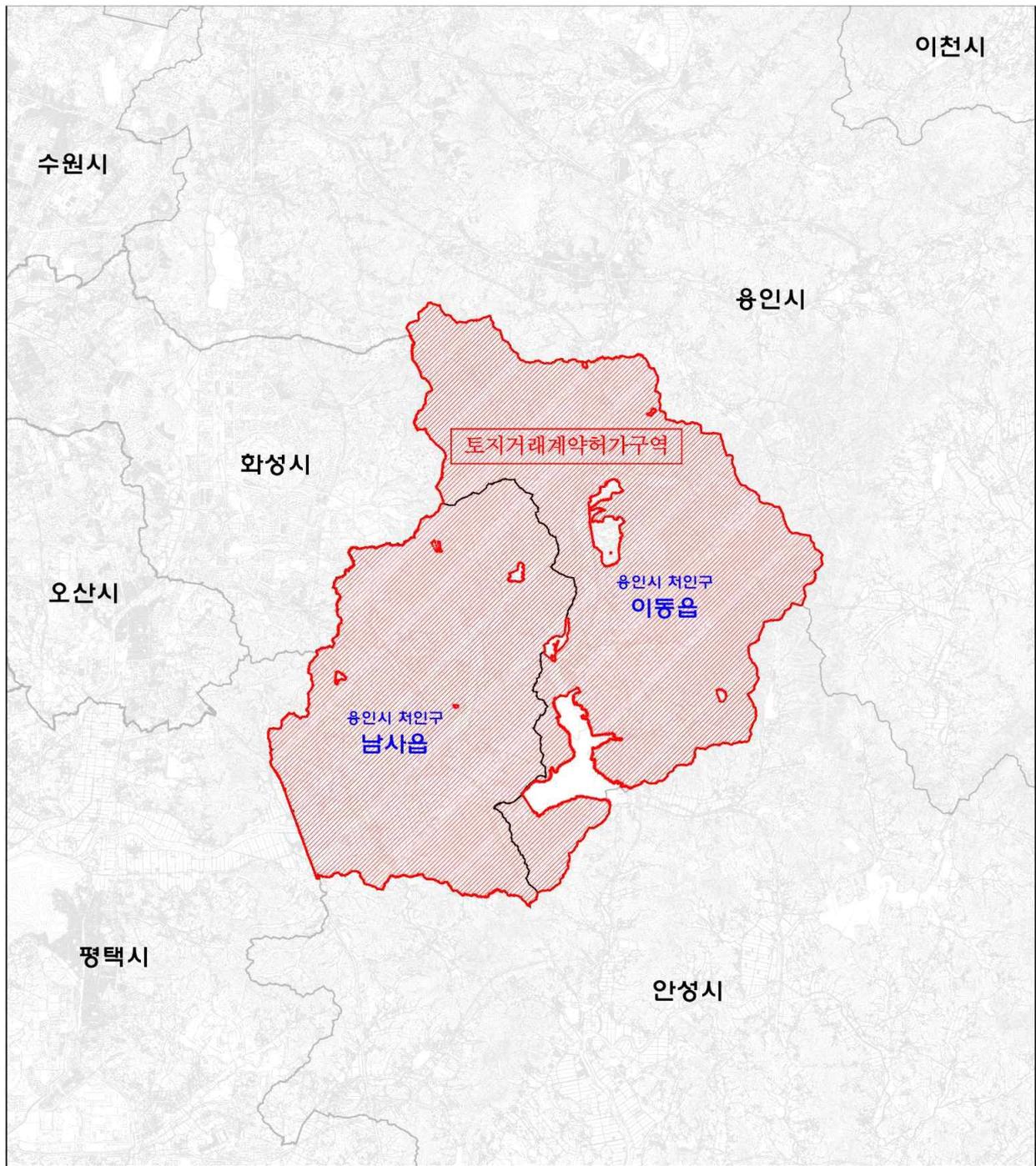
* 뉴스·소식-공지사항-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
※ 국토부 홈페이지 공고로 별도 첨부한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,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사항이
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허가구역 대상여부는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으로 함

5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: 붙임1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

[붙임 1]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



<p>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및 인근지역</p>	<p>범 려</p> <p>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</p>	
<p>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</p>	<p> 시경계</p> <p> 읍경계</p>	<p>S = 1 : 50,000</p> 